

# 『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 』 (案)

~~[중구 서애 내역분화거리 조성사업]~~

2016. 1. .



서울중구



서울지역본부

#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 (案)

## (중구 서애 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

본 협약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공중배전선로의 지중이설) 및 공중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지경부 고시 제2015-240호)에 따라 시행하는 “중구 서애 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부담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체결한다.

### 제 1장 총 칙

제 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서는 서울시 중구와 한국전력공사가 기존 공중배전선로의 지중화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권리의무 및 상호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당사자) 본 협약서의 당사자는 중구청(대표자 구청장 최창식)과 한국전력공사(대표자 사장 조환익, 대리인 서울지역본부장 이호평)이다.

제 3조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 본 협약서의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약서의 지중화 사업구간은 서애로16~필동로37(380m), 필동로24-1~퇴계로216(260m), 필동로16~퇴계로196(250m)로 하며 동 구간의 배전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다만, 민원 등에 따른 여건 변동, 사업예산 변경 등으로 사업구간의 확대·축소가 필요한 경우 서면합의(축소된 사업구역 도면포함)로 사업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본 협약서의 사업내용은 기존 공중배전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맨홀 설치, 관로설치, 지상기기설치, 전력선설치, 전주설치 및 철거를 포함하며, 기존 지중공급설비의 이설은 제외 한다.

### 제 2장 공사비 산정 및 정산

제 4조 (공사비의 산정)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한국전력공사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정하며, 도로복구공사비는 “중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중구청이 산정한다.

제 5조 (공사비의 부담주체 및 부담범위) 중구청은 한국전력공사가 설계한 총공사비(공중 배전선로 지중화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의 건설 및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와 이설부지 확보, 도로점용료, 인·허가, 권리설정 등 부대비용 포함)의 50%를 분담한다. 다만, 도로복구공사(기층 및 보조기층 포함)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의 건설, 부대비용 등의 포장복구공사비 일체는 중구청이 전액 부담하며, 중구청의 요청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전액 중구청이 부담한다.

제 6조 (공사비의 납부) 중구청은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분담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게 납부한다. 다만, 예산확보 시기에 맞추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7조 (공사비의 정산) 공사가 준공되면 한국전력공사는 공사비를 확정하여 정산서를 교부하며, 정산된 공사비에 따라 중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분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지급)한다. 다만, 전력설비 설치 부지가 제3자의 소유로서 부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또는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 준공정산과 별도로 중구청이 그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게 지급한다.

### 제 3장 기기설치 공간제공

제 8조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 및 제공) 중구청은 한국전력공사에게 지상기기 설치 관련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중구청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필요한 지상기기 설치장소 및 권원을 확보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제공한다.
2. 지상기기 설치장소는 중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된 장소에 지하매설물 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여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중구청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변경된 설치장소를 제공한다.
3. 도로 및 보도 등 공공용지에 지상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중구청이 한국전력공사에게 도로굴착허가서 및 기기점용허가서(영구점용) 등을 한국전력공사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다.

제 9조 (지중배전기기 설치공간 제공 제외 장소)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장소는 제외하며, 기타 일반인 및 전기설비(지중배전기기 포함)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 소화전, 도로가각의 교통시각 장애지역
2. 버스정류장 등 상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지역
3. 침수우려, 설치공간협소 등으로 유지보수 곤란지역.

## 제 4장 공사 시행

- 제 10조 (공사의 구분) 본 공사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도로복구공사”로 구분하며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도로복구공사”는 중구청이 시행한다.
- 제 11조 (공사의 착수시기) 본 공사는 중구청이 한국전력공사에게 제9조에 적합한 지상기기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공사비가 입금되면 착수한다.
- 제 12조 (민원처리) 공사기간 동안 제기되는 민원은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중구청과 한국전력공사의 협력 하에 공동대처한다.
- 제 13조 (협약의 해지) 한국전력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구청이 제 5조 및 6조에 따라 공사비를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제 8조 및 제9조에 의한 기기설치공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2. 중구청이 지중화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중구청의 요청에 따른 지중화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지중화사업이 3개월이상 연기되거나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상 사업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 제 14조 (협약의 해지시 공사비 정산) 제 13조 등 중구청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기 발생한 사업비와 협약해지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에게 발생한 손해는 전액 중구청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민원 등으로 중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합의하여 사업구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 5조에 따라 공사비 정산을 시행한다.

## 제 5장 사후관리 및 기타

- 제 15조 (지상기기 이설 부담) 중구청의 사유로 8조에 따라 제공한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이외로 변경을 요청하여 추가로 발생된 비용은 전액 중구청이 부담한다. 지중배전기기 설치 후 5년 이내에 주민 통행불편, 기타 민원 등의 사유로 중구청이 이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중구청이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일체(새로운 이설장소 권원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를 부담하며 새로운 이설장소도 중구청이 제공한다.
- 제 16조 (점용료 감면) 중구청은 한국전력공사에게 본 공사로 인해 설치된 관로, 맨홀, 지상기기 등 배전설비에 대하여 운영기간동안 계속해서 점용료를 1/2 감면한다.

